

#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동기기실 규정

제정 2004. 9. 1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동기기실(이하 “공동기기실”이라 한다)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범위)** 이 규정에 의한 공동기기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생명관 1층 1013호
2. 지하 1층 B105호
3. 기타 공동기기 관련 공간

**제3조(운영위원회)** ① 공동기기실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부학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공동기기실 기자재 배치 및 조정
4. 공동기기실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공동기기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

부칙(제57호, 2004.9.10.)

이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